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10.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9.14일 공포)에 따라 후속으로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제43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영입이 가능토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 공제부금 가입자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수요 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대출요건을 완화

또한 휴면조합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운영 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안 제43조)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기조합의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 조정([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나.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안 제13조)

공무원 경력자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을 촉진

※ 농·수·신흥 상임이사 자격기준 등 타법 수준과 유사하게 조정

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안 제21조제2항)

중소기업공제부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해야만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제한 요건을 1개월로 완화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요건 확대 (안 제41조의2)

휴면조합 지정요건을 ‘이사장 1년 이상 공석, 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 규정 추가

※ 다만, 자본잠식의 경우 설립인가일부터 3년 미경과 조합에 대
해서는 미적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30. ~ 12. 12.) 추진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임명하고자 하는 조합의 업종과 관련된 연구·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21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5.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만,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 3. 15.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 2</u> 와 같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u>별표 2</u> ----- ---
제13조(상근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u>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u> 2. <u>중앙회의 과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의의 부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u> 3.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u>	제13조(상근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u>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u> 2. <u>중소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u> 3. <u>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u>

<u>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u> 4.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5. 대학의 <u>조교수급 이상이거나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u> 6. 「<u>공인회계사법</u>」에 따른 공인회계사, 「<u>세무사법</u>」에 따른 세무사, 「<u>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u>」 제8조에 따른 <u>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u>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u>중앙회 회장이 인정하는 자</u>	<u>4. 임명하고자 하는 조합의 업종과 관련된 연구·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u> <삭 제> <삭 제> <삭 제>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등의 대출 등) ②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등의 대출 등) ② (현행과 같음) 1.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u>3개월 미만인 경우</u> 2. 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u>1개월 미만인 경우</u>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휴면조합의 지정요건) ① 법 제1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5조, 제82조, 제93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3조(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u><신 설></u> <u><신 설></u>	제41조의2(휴면조합의 지정요건)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u> <u>5.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만,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붙임]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개정안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현행	개정안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임원 또는 청산인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1호	3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법 제79조 또는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2호	30만원	300만원
	다. 법 제43조제3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3호	10만원	100만원
	라. 법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법 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4호	30만원	300만원
	마. 법 제63조 또는 제64조(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5호	30만원	300만원
	바. 법 제65조제2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6호	30만원	300만원
	사. 법 제68조제2항(법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공고를 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7호	30만원	300만원
	아. 법 제70조 또는 제71조(법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8호	20만원	200만원
	자. 법 제72조(법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법 제141조 제2항제9호	30만원	300만원
	차. 법 제73조제2항(법 제87조, 제98조 또는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10호	10만원	100만원
	카. 법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11호	30만원	300만원
	타. 법 제129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12호	30만원	300만원
	파.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법 제141조 제2항제13호	30만원	300만원
2. 법 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141조 제1항	50만원	5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432